

잠실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718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가. 잠실야구장은 프로야구 구단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가 홈구장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천만 시민이 프로야구를 즐기는 여가선용의 장소로 운영의 전문화와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주)LG스포츠와 (주)두산베어스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바,
- 나. 2019년 12월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만료에 따라 8회차 민간 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6567호 2017. 7.13.> 제2항에 의거 잠실야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잠실야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현황 〉

- 2000. 1. 1. ~ 2002.12.31. 신규 민간위탁 (LG스포츠·두산베어스)
- 2003. 1. 1. ~ 2005.12.31. 재계약 (LG스포츠·두산베어스)
- 2006. 1. 1. ~ 2008.12.31. 재계약 (LG스포츠·두산베어스)
- 2009. 1. 1. ~ 2011.12.31. 재계약 (LG스포츠·두산베어스)
- 2012. 1. 1. ~ 2013.12.31. 재계약 (LG스포츠·두산베어스)
- 2014. 1. 1. ~ 2016.12.31. 재계약 (LG스포츠·두산베어스)
- 2017. 1. 1. ~ 2019.12.31. 재계약 (LG스포츠·두산베어스)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잠실야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 시설규모

규 모	경기장 면적	건축 총 면적	좌석수
철근콘크리트조 / 지상 3층	26,331㎡	45,312㎡	24,339석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12.31. (3년)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위탁 (위탁료 부과)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재계약

나. 주요 위탁사무 : 잠실야구장 관리 및 운영 전반

-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제도, 매·수표, 청소, 판매시설 등 승인된 재임대시설 관리·운영, 시설·장비·비품 유지관리 및 운영 등
- 기타 시민의 여가선용과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잠실야구장은 1983년부터 프로야구 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천만 시민이 즐기는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로,
-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프로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팬 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스포츠마케팅 전개로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고구단인 (주)LG스포츠와 (주)두산베어스와의 재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잠실야구장을 프로야구 구단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9년 12월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과 같은 조례 부칙 제6567호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에 따라 8회 차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6567호> >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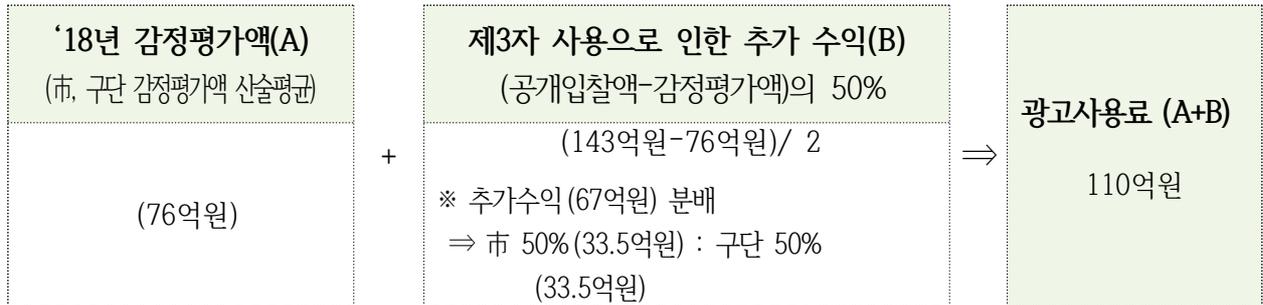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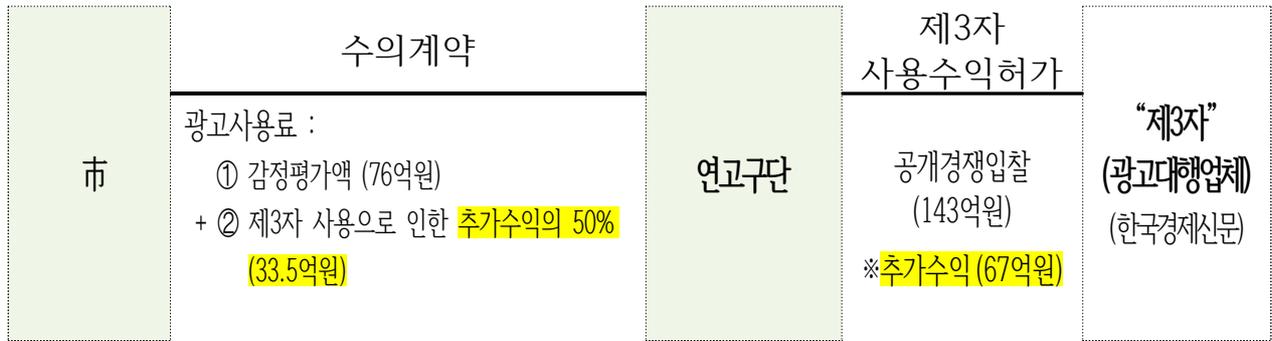
나. 잠실야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현황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인 잠실야구장은 (주)LG스포츠 (주)두산베어스에서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고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제도, 매·수표, 청소, 판매시설 운영, 매점 등 승인된 재임대 시설관리·운영,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경기장과 관련된 기기 운전 등을 주요 위탁사무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3년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
- 잠실야구장은 1982년 완공된 이래로 4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서울시체육시설사업소 등 서울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노후화를 고려한 대수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외부 수탁기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위탁자(구단)는 서울시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수준의 위탁사업료 및 광고사용료를 지불하고 잠실야구장의 시설활용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광고권 계약방식은 시와 연고구단이 수의계약으로 광고권 계약을 체결하고 연고구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제3자(광고대행업체)”에게 광고권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있음.

이때 사용료는 수의계약(감정평가액)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추가수익의 50%를 합산하고 있으며 잠실야구장을 통한 주요 수입원인 광고권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함.

〈잠실야구장 광고권 계약방식〉



- ▶ 감정평가액은 2개 감정평가업자(市.구단 각각 추천)가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 ▶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광고권 추가수익은 市와 구단이 50 대 50으로 분배

〈잠실야구장과 고척돔구장 간 계약방식 비교〉

구 분	잠실야구장	고척돔구장
계약 대상	광고시설물 29개 시설 (1895.3㎡)	광고시설물 24구역 443개소 (3065.61㎡)
계약당사자	市↔연고구단(LG.두산)	市↔연고구단(넥센히어로즈)
계약방식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용료 산정기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제3자(광고대행업체) 사용.수익허가 제3자(광고대행업체) 선정 방법	시행중 공개경쟁입찰	미시행 (*넥센은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지 않음)
광고권 사용료	110억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76억원) + 추가수익의 50%(33.5억원)	34억원 수의계약(감정평가액 34억원)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19.4.)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수탁사무의 핵심업무 내용이나 시설관리운영 조직인 관리본부 인력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옴.

수탁사무는 관리본부 내 5인의 인력으로 대표이사, 총괄본부장, 마케팅 및 영업 2명, 시설 및 용역관리 1명으로 구성되어 18년동안 관행적으로 시설관리 전문회사에 핵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음.

수탁사무의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시의 동의없이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협약사항 위반에 해당됨.

또한 시설담당야구 전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잠실야구장 시설관리 핵심업무(기계/건축, 전기/소방, 방송/통신, 방재 등) 수행을 위해서 전문기술직 인력을 관리본부에 고용하거나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잠실야구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위탁방법(수익창출형 위탁), 수탁기관 선정 방법(공개경쟁입찰)에 있어 법률적 기준은 충족함.

-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볼 때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잠실야구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 기관이 보유한 마케팅 및 홍보역량 등 핵심 경쟁력을 통해 창출한 운영수입이 서울시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위탁사업료 및 광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수탁기관에서 해당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체결한 수탁사무의 핵심내용이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핵심업무에 대한 제3자 재위탁 금지사항을 관행처럼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의 선정 관련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